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(주민자치과)를 폐지하고,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전담 기구를 신설하며
- 나. 기존의 일부 직제에 대하여 업무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 및 이와 관련한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직제개편

- 도시개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도시국에 둠(안 제3조의2)
- 총무국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함(안 제5조제1항, 부칙 제2조)
- 사회산업국의 환경청소과를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함(안 제6조제1항)
- 도시국에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 변경하여 직제순을 건설과, 재난안전과, 도시개발과, 건축과, 지적과로 함(안 제7조제1항)

나. 분장사무 조정

- 신규사무 : 3건
 - 기반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
 - 직원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
 -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

- 국간 사무이관 : 민방위업무의 총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외 6건
- 용어수정 : 2건
 - 기획감사실 : 심사평가 ⇒ 자체평가
 - 보건소 :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⇒ 마약류

3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4. 검토내용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4. 12. 18자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18603호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규정에 맞추려는 것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 -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조직에 대한 설치,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「여유기구제」를 도입하였고
 - 지방의회와 국민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였고, 종전에는 총 정원만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직급별·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규칙에는 총정원 뿐 아니라 직급별 정원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
 -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상세하게 적시하므로 지방 의회의 충실한 심의가 가능토록 하였음

-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도 1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였고
- 한시기구를(예:주민자치과)폐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있음
-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을 시달하여 시, 군, 구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관리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원 증원 승인을 내시한바 있음
- 이상과 같은 대통령령의 개정과 행자부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는 도시개발과로 하고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, 청소행정과를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,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변경 뿐 아니라 기타 현실에 맞는 용어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행자부 지침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.

2005. 3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